

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80호
- 나. 제출자 : 고영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2. 2.
- 라. 회부일자 : 2024. 2. 2.

## 2. 제안이유

저소득계층 및 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계층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심신 재활 및 동물복지 실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라. 동물병원 지정 및 협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마.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4.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동물보호법」 제2조, 제4조
- 「수의사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제정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 안 제4조에서는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및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진료비 및 장례용품(또는 위로금) 등에 대해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동물병원 지정 및 진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 체결에 관하여

- 안 제6조에서는 진료비 등에 대한 지원 중단 및 환수에 대해 규정함.

- 대한축산회의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의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인구는 약 1,262만명 인 것으로 추정됨.
- 우리구는 그동안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2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만 2021.12.30.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원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지원)제3항
- 지원대상 :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마리당 최대 40만원 상당의 의료지원(1인당 2마리까지, 연 1회 지원)
- 지원목표 : 100두
- 예 산 액 : 40,000천원 (사·구비 5 : 5 매칭사업)
-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 병원 (2023년 기준 8개소)

- |           |            |                |            |
|-----------|------------|----------------|------------|
| ① 금나래동물병원 | ② 노아동물병원   | ③ 금천종합동물병원     | ④ 조정연동물병원  |
| ⑤ 쿨핏동물병원  | ⑥ 더조은 동물병원 | ⑦ 금천24시K동물의료센터 | ⑧ 제일종합동물병원 |

○ 추진실적 (※ '22년부터 시행)

2022			2023			2024		
78두			76두			100(목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69두	5두	4두	64두	8두	4두	-	-	-

- 본 조례 제정안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동물 복지 등 쾌활한 반려동물 양육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반려동물 유기와 관련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인 점을 감안하면, 반려동물의 유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646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 동물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

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실험을 말한다.

13.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0.>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⑥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⑦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 수의사법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68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 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 3의2.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3. 11. 3.] [법률 제19400호, 2023. 5. 2., 일부개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0호, 2023. 4. 11., 일부개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4. 1. 21.]